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상욱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2년 1월 10일
- 회부일자 : 2022년 1월 11일

3. 제안사유

- 가.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우리민족 고유의 의학(醫學)으로, 특히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와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는 전통 의약 및 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해야 함.
- 다. 이에 충청북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 사회 대응 및 도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7조)

다.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제9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덕항)

가. 제출배경

○ (한의약 산업 동향)

- 현재 세계 의료시장은 사후적 치료에서 예방의학 중심의 개인 맞춤형 통합의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를 절감하고 보완대체의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전 세계 보완대체의학(Alternative Medicine) 시장은 2015년 403억2000만 달러에서 2025년 1,968억 달러로 성장이 예상되며,
-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 사업을 본격 시작한 이래 한의약 분야 외국인 환자는 ‘13년 9,554명에서 ’19년 23,723명으로 2.5배 정도 성장함.³⁾
- 또한, 국내 한의약산업 종사자수 및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국내 한의약산업 현황>

	2013	2015	2017	2019
종사자수(명)	98,358	106,481	108,746	115,375
매출액	8조266억원	8조2,044억원	9조4,282억원	10조3,630억원

※자료: 한국한의학연구원, 2020년 한의약산업실태조사 통계집(19년 기준), 2020.12.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 사회 대응 및 도민 건강

3)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보고서”, 2021. 2. 23쪽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현재 6개 광역시·도(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경기)에서 한의약 육성 조례를 제정·시행중임.

<타 시·도 한의약 육성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시·도	조 례 명	소 관 부 서	제/개정일
경기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보건건강국 보건의료과	2019-07-16
대구	대구광역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	혁신성장국 의료산업기반과	2019-10-30
대전	대전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	보건복지국 감염병관리과	2020-07-03
부산	부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	복지건강국 보건위생과	2020-01-01
울산	울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	시민건강국 식의약안전과	2020-09-24
인천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건강체육과 보건의료정책과	2020-07-14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림.
 - 용어 정의는 「한의약 육성법」 제2조에 규정된 내용을 옮긴 것으로 문제가 없음.
 - ※ “**한의약(韓醫藥)**”은 전통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한의사 고유영역)와 한약(韓藥)의 생산, 가공, 제조, 수입, 판매, 감정, 보관 및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포괄하는 개념임.
-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안 제4조(한의학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는 「한의학 육성법」 제4조에 따른 것으로, 서양의학에 대한 상대적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고려하여 한의학적 치료나 약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됨.
- 안 제5조(한의학 육성의 기본방향)는 「한의학 육성법」 제5조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정으로 문제가 없음.

<한의학 육성법과 충청북도 조례안의 비교 (한의학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학 육성법	충청북도 조례안
1. 한의학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1. 한의학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학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2. 한의학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학기술의 정보화	3. 한의학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4. 한의학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국제 기준 규격화	4.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5. 한약재의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	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6. 한의학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 안 제6조 및 제7조는 충청북도 한의학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및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
-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한의학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사무 위탁 및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안 제8조는 제5조(한의학 육성의 기본방향)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한의학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 촉진, 관련 시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
 - 안 제9조는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학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사무의 위탁을 필요로 하는 대상사업이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므로 문제가 없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 사회 대응 및 도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내용적으로 타당하며, 조례안 예고 및 집행부 협의를 거쳐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
- 한의약은 질병예방 및 치료 측면에서 효과성이 인정받고는 있지만, 양방의료시설의 보급 확대, 양방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한 복용방법, 일부 수입한약재의 안전성 문제, 과학적 검증의 미진 등으로 발전 속도가 더딘 상태임. 향후 중앙정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과학화,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전략적 제휴와 시책 개발이 요구되어지며, 도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약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 수립·추진이 요구됨.